

■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[별표 8] <개정 2006.2.21>

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표(제29조관련)

해 당 자	지 급 기 준
1. 공무원의 배우자	배우자인 공무원의 여비지급등급
2. 사립학교 교원	「법원공무원규칙」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예정계급의 여비지급등급을 준용한다.
3. 기타 공무원이 아닌 자	업무의 성격·동반공무원의 직위 및 당해 공무원이 아닌 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장이 정하는 여비지급등급